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  
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⑥

## 결핵으로 진단되어 입원하면 . . . (37 조)

### ★ 결핵이란

결핵은 결핵균을 들이쉬므로써 주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. 발병하더라도 가래 속에 결핵균이 나오지 않는 정도의 경우는, 타인에게 전염될 염려는 없습니다.

가래 속에 결핵균이 나오는 경우는,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튀어서 그 균을 주위 사람이 들이쉬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(만일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반드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.)

결핵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잘 복용하면 (통상 6 개월 이상)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.

### ★ 결핵 신고

결핵은 감염되는 병으로 법률에 의하여, 진단한 의사는 환자의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 및 직업등을 보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

의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정보와 본인 또 가족의 면담 등에 의해 증상과 생활상황 등을 청취합니다.

### ★ 입원권고와 인권보호

보건소는 청취 결과, 동거자 등에게 결핵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결핵환자로 판단한 경우는 결핵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[감염증법에 근거한 입원권고]를 실시합니다.

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하고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·고충이 있을 경우는 보건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보건소는 감염증진단협의회의 전문가 및 환자의 의견을 고려한 후 [입원권고]를 결정합니다.

(주)다른 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분으로 감염의 위험이 없는 경우는 [입원권고]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

### ★ 의료비의 공비부담 제도

[입원권고]에 따라서 결핵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의료비의 일부가 공비로 부담됩니다. (소득상황에 따라서는 입원 의료비 전액이 공비로 부담됩니다.)

공비부담 신청에 의거해 보건소가 [환자표]를 발행하여, 의료기관에 제시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공비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★ 접촉자 건강진단

보건소는 필요가 있을 경우는 결핵에 감염된 우려가 있는 가족과 일상생활의 접촉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의 검진을 권합니다.

문의·상담은 . . .

